

업무협력 협약서(MOU)

「(재)김해시복지재단」과 「김해 의생명·산업진흥원」은 다음과 같이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합의·실천하기로 한다.

제 1 조 (목적) 본 협약은 본 업무협약에 협의회한 기관이 상호 우호적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기술 사업화 관련 협력 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역 의료기기 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력사항)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.

1. 지역 내 기업 보유 의료기기·헬스케어 기기 실증서비스 추진
2. 의료데이터 공유 및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협조
3. 진흥원 보유장비 활용을 통한 데이터 기반 노인성 질환 관리 지원
4. 시민 복지분야 디지털 헬스서비스 지원
5.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의회한 업무

제 3 조 (협약이행) ① 각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에 의한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.

② 각 기관은 본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인적자원 및 정보의 상호 교류, 보유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에 적극 협조한다.

③ 협력사항의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제 4 조 (비밀유지) 각 기관은 업무상 지득한 상대방의 비밀사항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5 조 (협약의 변경) 본 협약 내용을 변경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은 상호 협의회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6 조 (효력)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
인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.

② 단, 유효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어느 일방으로부터
별도의 서면으로 된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자
동으로 1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.

제 7 조 (기타) 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
이견이 있을 경우 각 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이 성립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각 기관
의 대표자가 서명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. 05. 31.



(재)김해시복지재단

대표이사 최 정 규

최 정 규



김해 의생명·산업진흥원

원장 박 성 호

박 성 호